

# 한국체육대학교겸임교원규정

제정 1999. 4. 1. (규칙 제280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겸임교원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체육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겸임교원이라 함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중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학생의 교육, 현장실습 지도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직급 및 자격)** ①겸임교원은 겸임교수, 겸임부교수, 겸임조교수, 겸임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②겸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대학교원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겸임교수는 14년 이상, 겸임부교수는 9년 이상, 겸임조교수는 5년 이상, 겸임전임강사는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본직기관의 직위, 직급 등을 참작하여 겸임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임용절차)** ①겸임교원의 임용은 겸임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겸임교원임용을 추천하고, 총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겸임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본직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②겸임교원 활용 부서의 장이 겸임교원을 임용 추천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임교원 임용추천서
2. 겸임교원 직무계획서
3. 겸임 동의서
4. 학력 및 경력증명서
5. 재직증명서
6.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제 5 조(임용기간)**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임무 및 권리)** ①겸임교원의 임무는 아래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학(원) 강의 또는 실험실습 지도
2.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3.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4.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②겸임교원은 대학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겸임교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7 조**(면직) 겸임교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활용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활용부서의 장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8 조**(처우) 겸임교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강의, 실험실습 지도 등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9. 4. 1. 제28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동 의 서

1. 겸임부서 : 한국체육대학교
2. 겸임직급 :
3. 겸임기간 :
4. 겸임자 : 성명 ( ) 생년월일 ( )
5. 겸임직무 ( ) 학기당 2학점 이상의 대학(원) 강의 또는 실험실습  
( ) 대학원 논문지도  
( ) 기타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5. 기타 : 귀 대학교의 한국체육대학교겸임교원규정에 따름

상기와 같이 겸임교원이 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직기관장 (직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